

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2018년 11월 26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18년 8월 16일
- 다. 회부일 : 2018년 8월 21일
- 라. 상정일 :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18년 9월 6일 상정·심사보류
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2018년 11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황인식)

가. 제안 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6년 (사)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자원봉사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1)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(사)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
- 관련법령
 - (공동)법령 : 「민법」 (제32조)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(개별)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
 - 조 례 :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- 출연금액 : 5,205,060천원

2) 주요사업

-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혁신과 서울시센터 역할 고도화
 -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혁신
 -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
 - 서울지역 자원봉사 정책개발 과제 연구 및 이슈중심의 국제교류·협력
- 시민참여 인프라 조성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
 - 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자원봉사 홍보·캠페인
 - 지역과 연계하는 기업네트워크 운영 및 자원봉사 관리 인프라 고도화
- 청년 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
 - “동행” 사업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발전방안 마련
 - 봉사활동 경험 및 사회적 교류를 통해 자부심과 자기 성장 지원
 - 수요처 확대 및 봉사활동 다양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
 - 대학생 자원봉사 리더 양성 교육 운영, ‘동행’의 브랜드화 및 홍보 활동 전개

3)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자원봉사활동의 민·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·확산하기 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제18조 제3항)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('14.5.28.개정, '16회계 연도부터 적용) 되어,¹⁾ 2019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- 동 센터는 관련 법령(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19조 및 「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」 제2조²⁾)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,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「광역 자원봉사센터」로서 운영되고 있음.

나.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설립 등 현황 및 사업 실적

-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고, 인력은 31명으로 전년 대비 7명이 증가했으며, 2018년 출연금은 45억 7천 5백만원 규모이나, 2019연도 출연금(예정) 규모는 약 52억 5백만원(13.7%p 증가) 수준임.

<연도별 출연금 현황>

(단위:백만원)

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 (예정)
2,271	2,282	2,447	2,524	2,621	4,575	5,205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제4조(설립 및 사업 등) ①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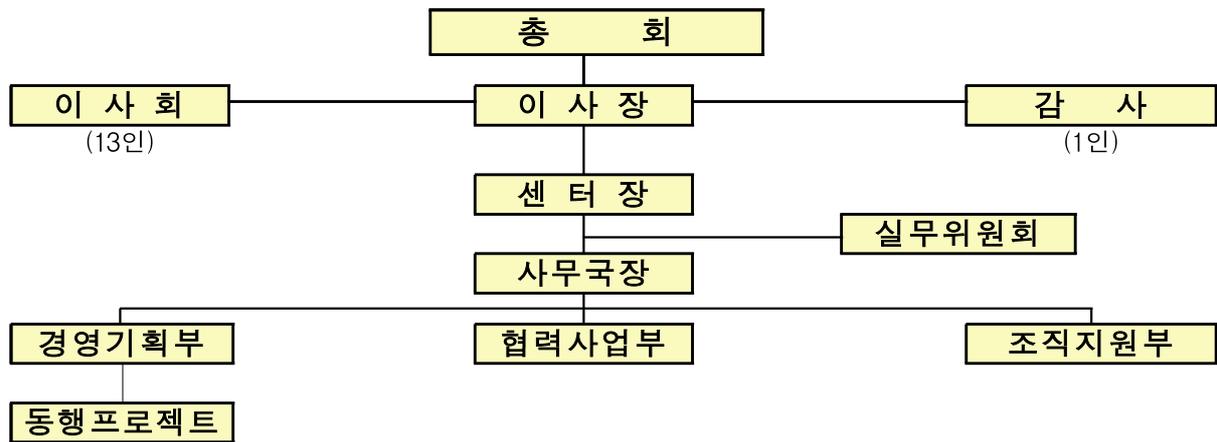
<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현황>

□ 설립 개요

- 기관명 : (사)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
- 설립형태 : 사단법인(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)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3층
- 설립일 : 2006. 1. 18.

□ 조직 및 인력

○ 조직



○ 인력

(2018.06.30 기준)

구분	계	임원 (센터장)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
정원	31	1	2	2	3	5	9	9	

※ 정원 외 인력 8명 별도운영 : 코디네이터 2명, 연구직 1명, 전산직 1명, 청년코디네이터(뉴딜일자리) 4명

○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

- 2018년도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혁신과 서울시센터 역할 고도화를 위해 ‘민간주도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모델링 구축’, ‘청소년봉사학습 혁신 모델 구축 사업’, ‘자원봉사 관리자 과정 및 자원봉사 학교 운영 과정개발’ 등을 신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,

※ 민간주도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모델링 구축 : 성과관리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(6회)

청소년 봉사학습 혁신 모델 구축 사업 : 1~3개 자치구, 50,000천원 지원

자원봉사 관리자 과정 및 자원봉사 학교 운영 과정개발 : 입문과정(2회), 직무과정(4회), 전문과정(10회)

-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과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등을 신규개발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‘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’을 운영하고 있으며,

※ 「V세상」 신규 파트너(청년단체, 스타트업 등) 발굴 및 활동콘텐츠 개발 지원(10개)
V파트너 공동사업 추진(2회) 및 네트워크 파티(1회)

‘일상 속 작은 실천’ 커뮤니케이터(전담 봉사자) 운영(20명) : 콘텐츠 개발 및 운영
커뮤니케이터 육성관리, 활동콘텐츠 개발 워크숍(1회) 및 활동사례 공유

안전·기후변화 등 테마별 ‘일상 속 작은 실천’ 기획 및 활동추진(6회)

‘안녕하세요’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캠페인 전개

- ‘자원봉사 관리의 인프라고도화 사업’ 및 ‘지역과 연계하는 기업 네트워크 운영’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.

※ 지역연계 프로그램 조사정보공유(4회), 자원봉사활동 고도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(4회)
기업-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오프라인 교류마켓 운영(1회), 기업설명회 개최(1회)

대규모 단기행사 및 공공서비스 관련 자원봉사자 모집·지원·활동평가(수시)

효율적 자원봉사 운영·관리를 위한 수요조사(1회) 및 컨설팅(12회)

자원봉사활동 운영자 교육(2회) 및 자치구센터 수요처 네트워크운영(2회)

〈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 〉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, 자원봉사단체(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·지원
3.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),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(이하 “자원봉사수요자”라 한다)의 협력·지원
4.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5.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
6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7.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
8.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
9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※ 「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」 제4조

다.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 필요성 검토

-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, 골목상권 및 자영업의 고충 증대,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, 아동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사회전반에 위험을 알리는 적신호에 따라 자원봉사를 통해 민간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음.
 - 또한, 재능기부의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, 다양한 자원을 가진 민간의 자원봉사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.
 - 특히,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하며, 중앙부처와 타 시·도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, 정보교환, 자원봉사 정보망 구축 등의 역할 수행은 존립이유라고 하겠음.
- 한편,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프로그램 변화가 빈번(참고자료 1)하고, 자원봉사 단체가 등록한 이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지 않는 단체가 존재하며, 관련 봉사횟수가 감소(참고자료 2)하고 있는 바, 이는 자원봉사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,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및 지속성 등에 질적 저하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 - ※ 관리체계의 수준은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및 지속성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결정하므로, 자원봉사자의 교육 경험과 활동의 만족수준이 자원봉사자의 적극성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※ 또한,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 전략 및 관리전략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만족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따라서,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록도 중요하지만,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보한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- 그러나,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대부분의 운용재원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, 인건비와 자체 운영비가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,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법령개정 협의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.
-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³⁾과 동 「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⁴⁾에서는 출연금이 ‘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이상’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‘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’에서 심의·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3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(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포함한다)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)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
2.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

- 행정국은 본 출연동의안 제출 전 심의·의결·공개의 절차를 누락하였는바,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적정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(사)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자원을 위하여 2006년 (사)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자원봉사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(사)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
- 관련법령
 - (공통)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(개별)법령 : 자원봉사활동기본법
 - 조 레 :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- 출연금액 : 5,205,060천원
 - 인건비 1,767,295천원(성과급 134,848천원 포함). 경비 776,765천원, 사업비 2,600,000천원, 자본지출 51,000천원, 예비비 10,000천원

나. 주요사업

-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혁신과 서울시센터 역할 고도화
 -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혁신
 -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
 - 서울지역 자원봉사 정책개발 과제 연구 및 이슈중심의 국제교류·협력
- 시민참여 인프라 조성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
 - 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자원봉사 홍보·캠페인
 - 지역과 연계하는 기업네트워크 운영 및 자원봉사 관리 인프라 고도화
- 청년 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
 - “동행” 사업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발전방안 마련
 - 봉사활동 경험 및 사회적 교류를 통해 자부심과 자기 성장 지원
 - 수요처 확대 및 봉사활동 다양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
 - 대학생 자원봉사 리더 양성 교육 운영, ‘동행’의 브랜드화 및 홍보 활동 전개

나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자원봉사사활동의 민·관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·확산시키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윤희문 (☎ 2133-5829)